

『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수강생의 출입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고, 시설사용허가 사항을 보완·명시하여 교육운영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수강생의 이용 제한 규정 신설(안 제4조)
- 사용허가 제한을 보완·명시(안 제7조)
- 변상조치에 대한 규정 신설(안 제1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 및 제21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수강생의 출입 제한 규정 및 시설 사용허가의 제한 규정, 변상 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원이 영리목적, 정치 및 종교적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나,
- 안 제4조의 수강생의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출입 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안 제12조의 변상조치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교육운영 및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본 조례안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.